

『대한해운 인권경영 정책』

대한해운은 기업활동과정에 있어 임직원을 비롯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상생을 지향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준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인권존중 및 보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인권, 노동, 환경개선과 반부패활동에 관한 UNGC 10대원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등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지침(UNGPs)을 기반으로 해당원칙들이 반영된 국내 법령 준수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의 예방과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인권경영 이해관계자

임직원	대한해운 성장동력, 주체
협력사	비즈니스의 원동력
고객사	대한해운의 가치공유

√ 대한해운 인권지침

Buildup	근로시간, 근로조건 보장
	안전한 산업, 근무환경 보장
	개인정보보호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비즈니스 파트너의 인권보호
	환경권보장
Do not	차별금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폭력 금지

√ 대한해운 인권지침 전문

1. 차별금지

대한해운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기본으로 성별, 인종, 국적, 언어, 나이, 종교, 장애여부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2. 근로시간, 근무조건 동등한 보장

대한해운은 각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이에 수반된 노동관계 법규와 절차를 준수합니다.

3. 강제노동 금지

대한해운은 근로자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보장함을 기본으로 모든 업무수행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부당한 근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4. 아동노동 금지

대한해운은 법령에 규정된 미성년 및 아동의 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고용하지 않습니다.

5. 안전한 산업, 근무환경 조성

대한해운은 임직원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 정비와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안전, 보건과 관련된 법령, 기준, 절차, 내부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6.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금지

대한해운은 직장 내 폭언, 성희롱, 성폭력을 비롯한 정신적/육체적 모든 괴롭힘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합니다. 일련의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익명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제보채널을 통해 피해사실의 구제를 보장하고, 익명성 보장을 통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7. 개인정보보호

대한해운은 모든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8. 결사의 자유 보장 및 단체교섭권의 인정

대한해운은 각 국가 또는 지역에서 보장하는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노동조합의 결성 및 가입 등의 결사, 단체교섭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이에 따른 노동조합가입, 결성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나 차별을 금지합니다.

9. 비즈니스 파트너의 인권보호

대한해운은 주요 협력회사 및 공급사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의무이행을 약속합니다. 또한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안전과 니즈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0. 환경권 보장

대한해운은 친환경경영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환경 관련 정보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 관리

대한해운은 정기적인 인권정책의 검토, 리스크 관리, 교육 등의 관리를 통해 법률 준수를 비롯하여 선도적 인권경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